

2025년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정책포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성과분석 및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일시 2025. 10. 23.(목)

장소 충청북도 C&V센터



원장님 축사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김영배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저희 충북 오송지역에서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이성창 협의회장님과 연말 수시 재정투자심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포럼을 위해 충청북도를 방문해 주신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 임직원,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새정부에서는 AI강국 실현, 기후위기 대응, '5극 3특'중심의 균형성장, 자치분권 강화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에서는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 대응, 자치재정권 확보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재정권 확보차원에서 지방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변화와 제도 개선을 오늘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지방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정책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전희경입니다.

먼저, '2025년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하반기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이번 행사를 충북과 충남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어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오던 자유무역 질서가 빠르게 쇠퇴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협이 세계 경제에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위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흡수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세출 수요는 급증하는, 한마디로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현명한 선택'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사업 검토자가 아니라,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을 속아내는 '지방재정의 수문장'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지방공투 센터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국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지방 투자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지방공공투자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충남연구원장 전희경

2025년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하반기 정책 포럼 개최 계획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도 운영상의 변화와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며 실무 역량 제고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공공투자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교류·소통·협력의 場 조성

I 추진목적

- 지방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투자관리 인력 역량강화
- 센터 간 업무교류와 상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지식 교류
- 공동연구과제 성과발표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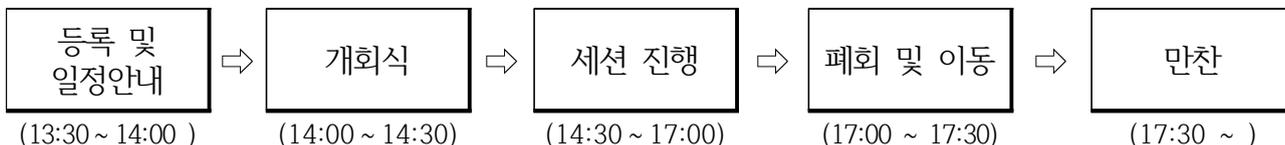
II 추진개요

- 일 시 : 2025. 10. 23.(목) 13:00 ~ 17:00
- 장 소 : 충청북도C&V센터 대회의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 주최/주관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충남·충북공공투자관리센터
- 참석 : 80 ~ 100명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외부 전문가, 내빈 등)

III 주요내용

- 첫 번째 세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 발표: 윤하연 박사(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함창모(충북공공투자관리센터)
 - 토론: 류시균(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상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손희준(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성일(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두 번째 세션: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발표: 김동근 박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김진기(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 토론: 김대중(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송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박병희(순천대학교 경제학과), 정창용(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IV 진행흐름



V 세부 진행계획

시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3:30	14:00	30'	▣ 참석자 등록	
14:00	14:10	10'	▣ 개회식 : 행사 안내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
			▣ 환영사	이성창 (협의회회장/서울연구원)
14:10	14:20	10'	▣ 축사	김영배 (충북연구원장)
				전희경 (충남연구원장)
14:20	14:30	10'	▣ 기념촬영	
		30'	▣ 첫 번째 세션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14:30	15:40	30'	▣ 토론: 류시균(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상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손희준(청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성일(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	▣ 종합정리 및 질의응답 :좌장 진행	함창모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15:40	15:50	10'	▣ coffee break	
		30'	▣ 첫 번째 세션 :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동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5:50	17:00	30'	▣ 토론: 김대중(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송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박병희(순천대학교 경제학과) 정창용(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	
		10'	▣ 종합정리 및 질의응답 :좌장 진행	김진기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17:00	17:30	30'	▣ 폐회 및 이동	
17:30	~		▣ 만찬	바다향

※ 위 일정은 내용 변경 및 참석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I 행사장 위치도

○ 충청북도C&V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만찬회: 바다향(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84)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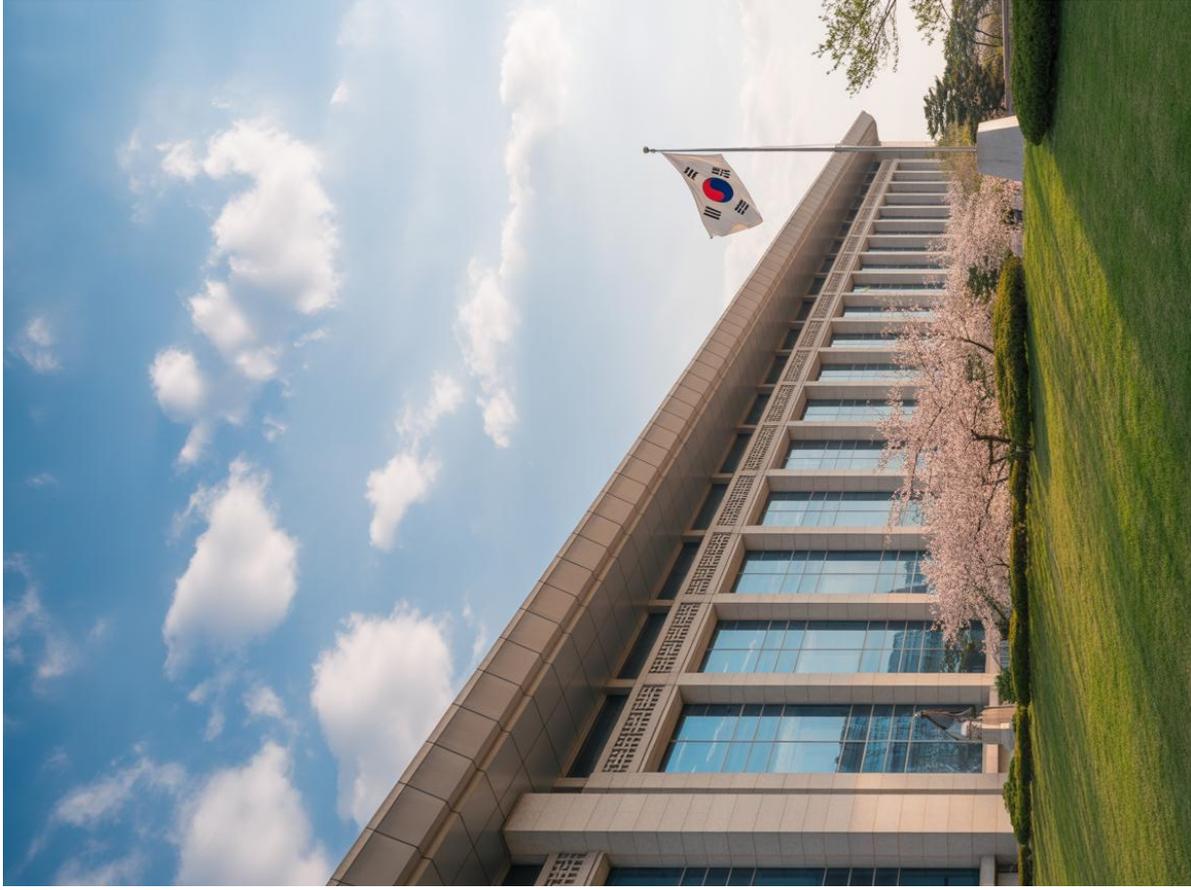


Ⅶ

셔틀 안내

- 오송역 → 행사장 버스 운행 시간표(탑승장 : 오송역 6번출구 앞 사진 참조)
 - 12:20, 2:40, 13:00, 13:20, 13:40
 - 행사장 → 오송역 버스 운행은 행사종료 후 오송역 8번 출구 인근 만찬장소까지 운행
- ※셔틀 탑승장소(사진 내 표시된 장소에서 탑승)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연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2025.10.2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윤하연

목차

01

지방재정관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02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황 및 성과

03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장기적 역할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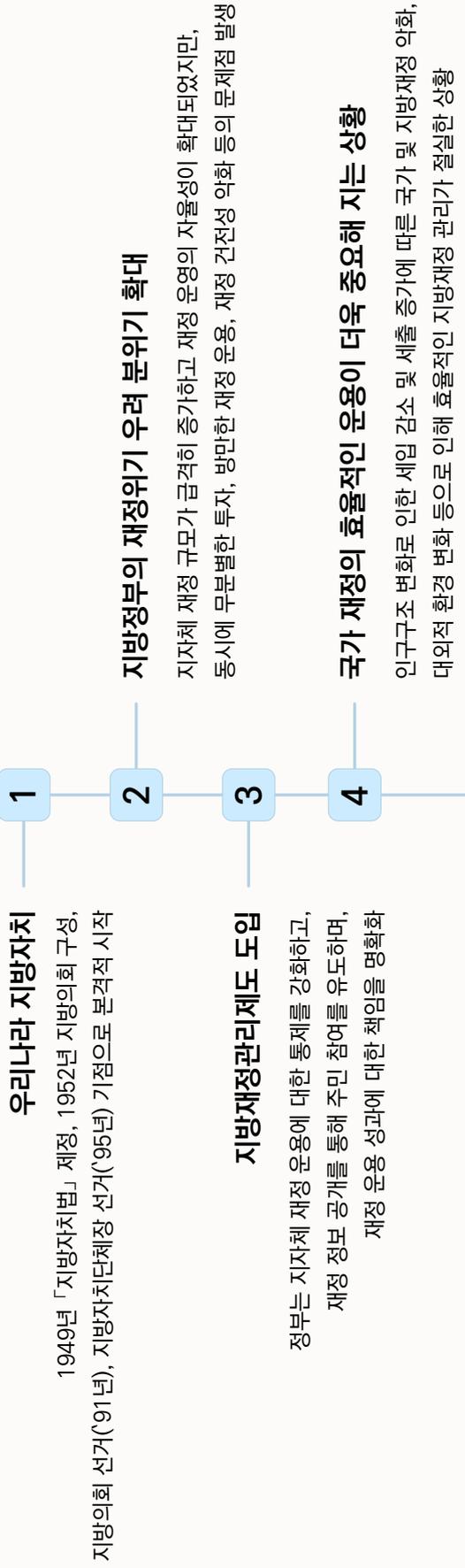
01

지방재정관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1. 지방재정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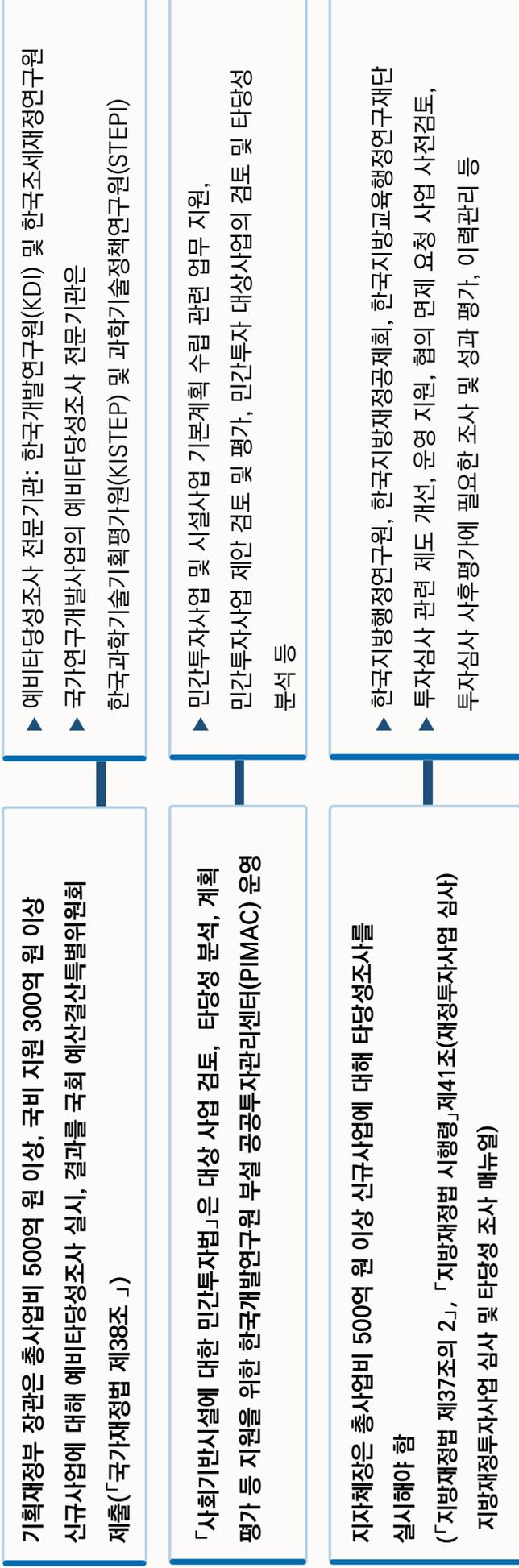
2. 지방재정투자심사

1. 지방재정관리제도



1. 지방재정관리제도

재정의 효율성과 전문기관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거나,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지자체장 방침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법률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

2.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대상 및 주체

구분	사업유형	심사주체(기원)		
		자체심사	의뢰심사	
		심사주체(기원)	의뢰심사	
		자체심사 (시군구→시도)	의뢰심사 (시도/시군구→행안부)	
공통	외국자본도입사업	-	10억 원 이상	
	이전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전액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지역자치 단체 (시·도)	자체재원 일반투자사업	40억 원 이상	-
		홍보관·행사성 사업	5억 원(홍보)/3억 원(행사)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4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기초자치 단체 (시·군·구)	이전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20억 원 이상~60억 원 미만 (대도시 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전액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20억 원 이상~60억 원 미만	-
	자체재원 일반투자사업	20억 원 이상	-	
		홍보관·행사성 사업	3억 원(홍보)/1억 원(행사) 이상 ~60억 원(홍보)/3억 원(행사) 미만	200억 원 이상
	시·군·구 공동협력사업	20억 원 이상~6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2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2025년 투자심사제도 변화

▶ 자율성 확대

- 자체 재원 사업 심사 완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 심사 범위 확대
- 우발채무(보증·협약) 사업 자체 심사 범위 확대
- 공동·협력사업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 (300억 원 → 500억 원)
- 국고보조사업 심사 면제 확대(80% 이상 → 70% 이상)
- 예산 편성 없이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심사 제외

▶ 책임성 강화 조치

- 위법 사업 사후관리 강화: 투자심사 없이 추진, 재심사 요건 미행 등 위법 추진 사업에 자체 조사 및 점검,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 강화
- '지방재정 365' 시스템 통한 투자심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 강화

02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황 및 성과

1. 지방공투자센터 운영 현황
2. 지방공투자센터의 투자심사 지원
3. 투자심사 현황 및 결과 분석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5. 센터 운영 성과

1. 지방공공투센터 운영 현황

설립 근거 및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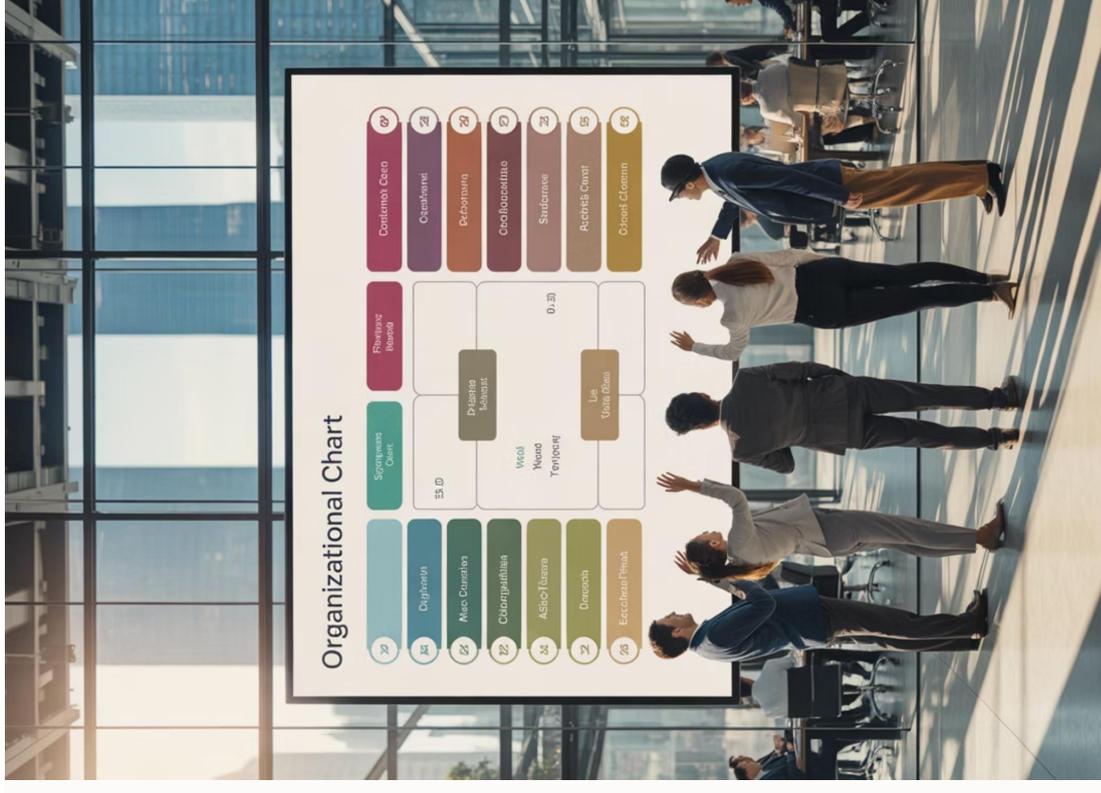
(2025년 4월 기준)

구분	설립시기	공투 조례	하부조직	총원	직급	예산	민자 전문기관
서울	2012. 5.	0	◆ 재정기획팀 ◆ 조사1팀 ◆ 민자사업팀 ◆ 조사2팀	29	센터장(1) 박사급(6) 석사급(22)	연구원 예산 포함	0
부산	2013. 9.	0	◆ 조사1팀 ◆ 조사2팀	10	센터장(1) 박사급(4) 석사급(5)	연구원 예산 중 별도 세목 편성	0
대구	2023. 2.	-	없음	4	센터장(1) 박사급(3)	연구원 예산 포함	-
인천	2020. 1	0	없음	10	센터장(1) 박사급(4) 석사급(5)	연구원 예산 중 별도 세목 편성	0
광주	2023. 10	-	없음	3	센터장(1) 박사급(2)	연구원 예산 포함	-
울산	2016. 1.	-	없음	6	센터장(1) 박사급(3) 석사급(1) 학사급(1)	연구원 예산 중 별도 세목 편성	0
경기	2018. 9.	0	◆ 총괄기획부 ◆ 투자분석평가2부 ◆ 투자분석평가1부	18	소장(1) 박사급(7) 석사급(6) 행정직(4)	특별회계 별도 운영	0
충북	2012. 2.	0	없음	5	센터장(1) 박사급(1) 석사급(3)	연구원 예산 중 별도 세목 편성	-
충남	2017. 1.	0	없음	6	센터장(1) 박사급(3) 석사급(2)	연구원 예산 중 별도 세목 편성	-
전북	2024. 10.	-	없음	3	센터장(1) 박사급(2)	연구원 예산 포함	-
전남	2020. 5.	-	없음	2	센터장(1) 박사급(1)	연구원 예산 포함	-
경북	2023.	-	없음	5	센터장(1) 박사급(3) 석사급(1)	연구원 예산 포함	0
경남	2015. 2.	0	◆ 재정사업팀 ◆ 민자사업 및 건설팀	7	센터장(1) 박사급(4) 석사급(2)	연구원 예산 포함	0
제주	2016. 10.	0	없음	7	센터장(1) 박사급(1) 석사급(4) 행정지원(1)	특별회계 예산편성	-

1. 지방공투센터 운영 현황

센터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조사(지방재정, 중앙투자) ◆ 예비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지원 ◆ 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 ◆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자심사 사업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 연구 ◆ 재정부문 연구(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기타	민간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맞춤형 컨설팅 (재정, 민자사업) ◆ 실무자 컨설팅 및 교육 ◆ 용역비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등 사전검토 ◆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분석·검토 ◆ 제안서 평가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등 검토 ◆ 자금제조달 관련 업무 ◆ 관리이행계획 수립



2. 지방공투센터의 투자심사 지원

투자심사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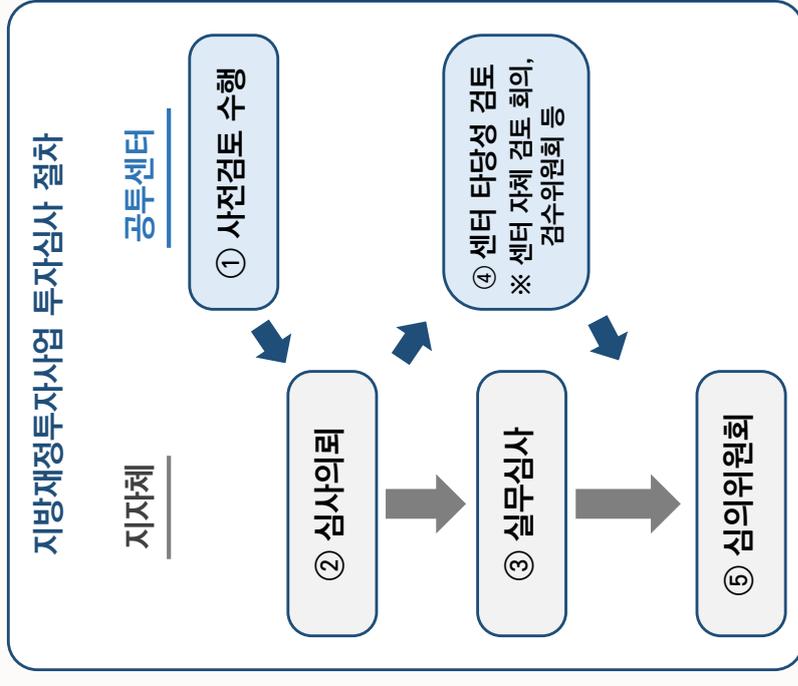
투자심의위원회 전 사전검토

-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정기투자심사 의뢰 전 의뢰서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는 사전검토 제도 운영
-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 등은 심사 담당부서와 실무심사 (합동집무) 수행
- 서울시는 의뢰사업 중 센터 타당성 검토 사업 선정
- 광주는 100억 이상 사업만 센터 검토 수행



검토 단계 및 심의위원회

- 자체 검토 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관성·객관성 확보 위해 노력
- 경기도는 검토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검수위원회 운영
- 센터장 또는 연구진이 투자심사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위원회에 배석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줌



2. 지방공투센터의 투자심사 지원

투자심사 관련 추가 업무

	<p>서울: 투자심의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재정투자사업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심사하며, 적정, 조건부, 재검토, 심층심사 의사결정</p>
	<p>부산: 신규사업 사전심사 중앙투자심사·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재정투자사업 사전심사,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체크리스트 추가 검토</p>
	<p>인천: 심의결과 사후평가 2025년 시범 실시 중으로, 과거 4년 심의대상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조건부 이행 내역 점검</p>
	<p>충남: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의뢰시) 행사성 사업(연례 행사) 진행 후 사후 타당성 검토</p>
	<p>경남: 심의결과 비교검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공투센터 심사결과 비교 검토</p>

3. 투자심사 현황 및 결과 분석

자치단체 투자심사 현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2022~2024년 투자심사 현황

투자심사 의뢰 이후 위원회 상정 이전에 사전검토, 실무심사 과정에서 철회·취하·반려되는 사업으로 인해 투자심사 의뢰 건수와 위원회 상정 건수 차이 발생

센터에서 대부분 의뢰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철회·취하·반려 사업 등으로 인해 의뢰 및 상정 건수와 센터 검토건수 간 차이 발생

- ▶ 서울시는 행사성 사업 및 일부 센터 검토가 불필요한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 ▶ 경북은 일부 중점 사업 위주로 검토 업무를 수행

지자체별 투자심사 단계별 투자심사 건수(2022~2024)

구분	투자심사 의뢰 건수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건수	공투센터 검토 건수
A	621	550	345
B	311	298	307
C	219	210	209
D	235	206	214
E	196	174	193
F	-	658	-
G	-	282	282
H	-	427	419
I	-	559	-
J	-	563	54
K	504	498	504
L	351	345	351

3. 투자심사 현황 및 결과 분석

자치단체 투자심사 결과

투자심사 통과율은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2단계 포함)으로 통과된 사업 건수

- ▶ 의뢰 대비 통과율: 최초 공문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한 건수 대비 통과율 (사전검토, 실무심사 단계의 철회·취하 등 포함)
- ▶ 상정 대비 통과율: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건수 대비 통과율

투자심사 접수 이후, 실무심사 등의 단계에서 철회·취하·반려되는 사업이 많을수록 상정 대비 통과율에 비해 의뢰 대비 통과율이 낮게 나타남

- ▶ 7개 지자체 의뢰 대비 통과율은 평균 86.3%로 상정 대비 통과율 대비 5.8%p 낮음.

지역별 투자심사 통과율(2022~2024 평균)

구분	투자심사 통과율(%)		차이(%)
	상정 대비	의뢰 대비	
A	84.3	74.7	9.6
B	98.7	94.3	4.4
C	98.1	94.0	4.1
D	86.4	75.5	10.9
E	97.0	88.7	8.3
F	89.3	88.2	1.1
G	90.6	88.8	1.8
H	89.4		
I	87.5		
J	96.5		
K	93.8		
L	91.3		
7개 지자체 평균	92.1	86.3	5.8
전체 평균	91.9	-	-

3. 투자심사 현황 및 결과 분석

자치단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비교(2022~2024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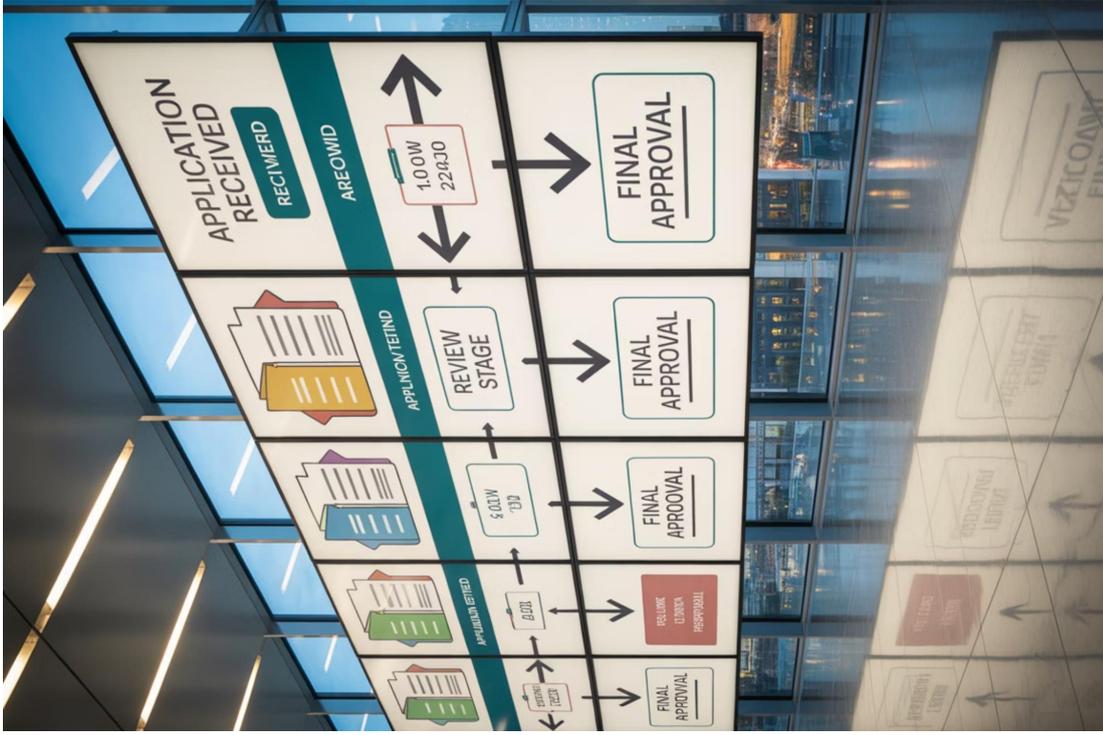
구분	의뢰 대비 통과율(%)			상정 대비 통과율(%)		
	지방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차이	지방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차이
A	74.7	64.1	10.6	84.3	74.2	10.1
B	94.3	82.8	11.5	98.7	91.6	7.1
C	94.0	81.6	12.4	98.1	88.2	9.9
D	75.5	65.4	10.1	86.4	82.4	4.0
E	88.7	71.2	17.5	97.0	84.3	12.7
F	88.2	74.5	13.7	89.3	82.4	6.9
G	88.8	67.2	21.6	90.6	79.1	11.5
H		63.6		89.4	74.6	14.8
I		71.1		87.5	79.7	7.8
J	-	72.8	-	96.5	82.7	13.8
K		70.5		93.8	79.8	14.0
L		71.5		91.3	79.4	11.9
7개 지자체 평균	86.3	72.4	13.9	92.1	83.2	8.9
전체 평균		71.4	-	91.9	81.5	10.4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의뢰 대비와 상정 대비로 구분하여 통과율 비교

중앙투자심사 상정 대비 통과율은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반력된 사업 제외(결과 공표 목록에 반력 포함)

동일기준으로 지방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비교 결과 8.9~13.9%p 수준 차이 발생

- ▶ 중앙투자심사 의뢰 대비 통과율(평균 71.4%)과 지방투자심사의 상정 대비 통과율(평균 91.9%) 비교 시 통과율 차이 확대
- ▶ 7개 지자체 의뢰 대비 통과율은 평균 13.9% 차이 발생
- ▶ 7개 지자체의 평균 상정 대비 통과율 차이는 8.9%p
- ▶ 12개 지자체의 평균 상정 대비 통과율 차이는 10.4%p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분야별 투자심사 건수 및 통과율(2022~2024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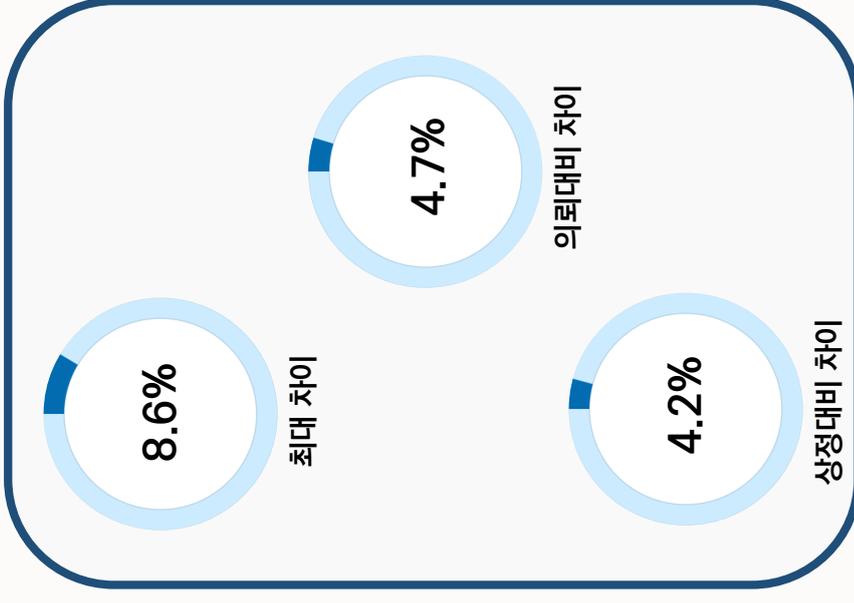
구분	광역지자체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건수	비중(%)	통과율(%)	건수	비중(%)	통과율(%)
일반공공행정	280	7.6	92.9	54	6.9	81.5
공공질서 및 안전	18	0.5	100	3	0.4	100
교육	23	0.6	100	11	1.4	45.5
문화 및 관광	1,369	37.0	83.7	211	27.1	61.6
환경보호	173	4.7	96.0	58	7.4	81.0
사회복지	200	5.4	95.0	26	3.3	69.2
보건	49	1.3	75.0	11	1.4	90.9
산업·중소기업	419	11.3	82.4	142	18.2	78.2
수송 및 교통	494	13.3	90.5	99	12.7	69.7
국토 및 지역개발	284	7.7	76.2	104	13.3	67.3
과학기술	46	1.2	100	8	1.0	100
농림해양수산	350	9.4	100	53	6.8	66.0

-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연계반복 행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사업비중이 가장 높고 통과율도 높음
- ▶ 교육 분야 중투심사는 초·중고 신설, 플리텍 캠퍼스 신설 등의 사업으로 반려되거나 재검토 사업이 많은 반면, 지자체 교육사업은 주로 학교 내 강당 신축, 교육박람회 등으로 사업 성격이나 규모에서 중투심사와 차이가 큼
-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다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 지방은 국비지원 사업의 통과율이 높은 편임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행사성 및 국고보조 사업을 제외한 투자심사 통과율(2022~2024 평균)

구분	전체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 (A)		행사성 및 국고보조 사업 제외 투자심사 통과율 (B)		차이 (A-B)	
	상징 대비 통과율(%)	의뢰 대비 통과율(%)	상징 대비 통과율(%)	의뢰 대비 통과율(%)	상징대비 통과율(%)	의뢰 대비 통과율(%)
A	84.3	74.7	77.2	68.2	7.1	6.5
B	98.7	94.3	97.3	87.5	1.4	6.8
C	98.1	94.0	92.4	85.4	5.7	8.6
D	86.4	75.5	79.8	70.7	6.6	4.8
E	97.0	88.7	93.2	90.3	3.8	-1.6
F	89.3	88.2	83.3	80.1	6.0	8.1
G	90.6	88.8	90.3	88.9	0.3	-0.1
H	89.4	-	-	-	-	-
I	87.5	-	79.6	-	7.9	-
J	96.5	-	95.9	-	0.6	-
K	93.8	-	94.0	-	-0.2	-
L	91.3	-	81.9	-	9.4	-
7개 지자체 평균	92.1	86.3	87.6	81.6	4.5	4.7
전체 평균	91.9	-	87.7	-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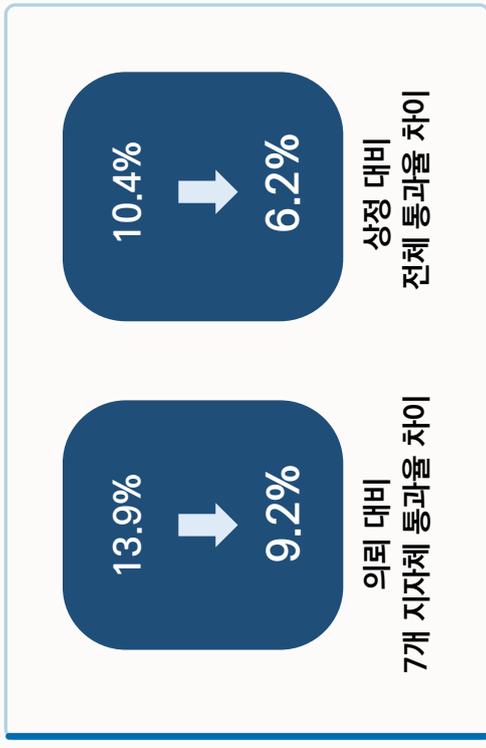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행사·국고보조사업 제외한 자치단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비교(2022~2024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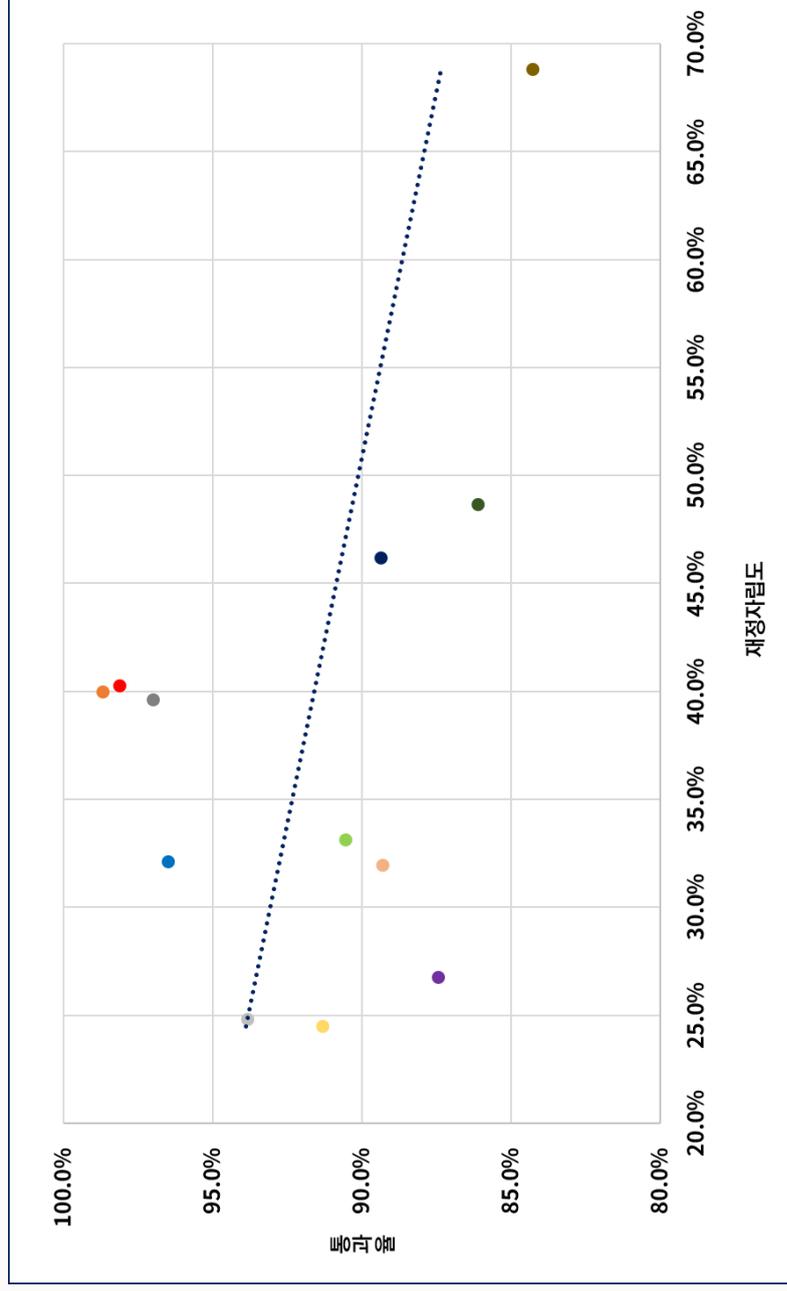
구분	의뢰 대비 통과율(%)		상정 대비 통과율(%)		차이
	지방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지방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A	68.2	64.1	77.2	74.2	3.0
B	87.5	82.8	97.3	91.6	5.7
C	85.4	81.6	92.4	88.2	4.2
D	70.7	65.4	79.8	82.4	-2.6
E	90.3	71.2	93.2	84.3	8.9
F	80.1	74.5	83.3	82.4	0.9
G	88.9	67.2	90.3	79.1	11.2
H		63.6	-	74.6	-
I		71.1	79.6	79.7	-
J	-	72.8	95.9	82.7	13.2
K		70.5	94.0	79.8	14.2
L		71.5	81.9	79.4	2.5
7개 지자체 평균	81.6	72.4	87.6	83.2	4.4
전체 평균	-	71.4	87.7	81.5	6.2

행사성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 투자심사 통과율을 중앙투자심사 통과율과 비교 일부 지자체 상정 대비 통과율은 중앙투자심사 평균 통과율 81.5% 보다 낮게 나타남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재정자립도 대비 위원회 상정기준 통과율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투자심사 통과율 비교

- ▶ 전체적으로 우하향 추세로 보이거나 재정자립도가 45% 이하인 자치단체에서는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음
- ▶ 각 광역자치단체 본청 기준 데이터로 투자심사 통과율은 기초단체 상정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해석상 한계 있음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센터 검토의견과 투자심사결과 비교(2022-2024 평균)

구분	센터 검토 의견			심의위원회 결과	차이 (B-A, %)	
	공투센터 검토건수	통과(적정, 조건부) 요지의 의견				
		건수	비율(%), A)			건수
A	345	238	69.0	550	83.6	14.6
B	307	285	92.8	298	98.7	5.9
C	209	206	98.6	210	98.1	-0.5
D	206	177	85.9	206	86.4	0.5
E	504	319	63.3	498	89.2	25.9
F	351	195	55.6	345	91.0	35.4
G	419	327	78.0	427	96.7	18.7
H	54	40	74.1	563	91.1	17.0
I	193			174	97.1	
J			-	658	89.4	-
K	282			282	87.6	
L	-			559	93.6	
8개 지자체 평균	-	-	77.2	-	91.9	14.7

지방공투센터 역할의 제도적 한계

센터 검토의견은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위원회 참여 및 발언 여부 등에 따라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

지자체별로 센터 통과 의견 비율과 위원회 심의결과에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센터 검토 의견이 위원회 심의에 비해 보수적인 의견 제시

이는 지방공투센터가 지자체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되어, 독립성이 낮고 객관적인 검토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음

중앙정부가 투자심사 절차에서 지방공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 검토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투자심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사전검토 및 컨설팅 제도 운영

구분	내용
서울	사업 타당성 검토를 1차·2차 검토로 구분 사업부서가 1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의뢰서로 2차 검토 수행
부산	*투자심사의뢰전 자체 사전심사제도 운영: 기획조정실장, 예산·공공기관·재정협력·회계재산담당관 및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 심의 통하여 투자심사 상정여부 및 상정요건 등 결정
인천	투자심사의뢰전 센터 사전검토 절차를 가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 컨설팅과 상시적인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을 통해 투자심사 접수 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

**대부분 센터에서 사전심의, 센터 사전검토,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사업계획 보완 후
투자심사를 이행함에 따라 투자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이 외에도 담당자 교육,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연구 및 홍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투자심사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음



4. 투자심사 결과 차이의 구조적 원인

종합

지자체와 중앙 투자심사 통과율 산정기준의 일관성 유지 필요

- ▶ 실무심사 등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센터 의견 개진에 따라, 위원회 상정 전 철회·반려되는 사업으로 인해 의뢰 대비 통과율이 상정 대비 통과율 보다 낮음
- ▶ 중앙투자심사는 실무심사 과정의 반려 사업을 포함한 투자심사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투자심사 통과율은 위원회 상정 사업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음
- ▶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지자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차이는 8.9~13.9%p 수준으로 줄어들

중앙투자심사와 지자체 투자심사 통과율 차이의 구조적 원인

- ▶ 지자체와 중앙투자심사 사업 분야의 구성이나 규모에 차이가 있어 사업 내용이나 검토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 지자체의 경우 **행사성 사업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투자심사 통과율이 높게 나타남이 확인되며, 행사·국비보조사업 제외시 지자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과 차이는 **4.4~9.2%p** 수준으로 줄어들
- ▶ 공투센터는 지자체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지자체에서는 공투센터를 중심으로 사전검토, 컨설팅, 사전심의 등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투자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5. 센터 운영 성과

지방 투자심사 절차 체계화

지방 투자심사 절차 체계화	지체 타당성 검증
<p>타당성 조사(법적 의무 기준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억 이하 사업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공백을 일부 지방 공투센터에서 점차 채워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지체 타당성 검토는 사업 시행 대안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오류를 포함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투센터에서 이를 검증하는 역할 수행
사전검토 및 사전 심의	사업부서 담당 교육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는 지자체 예산 편성 전 마지막 심의 절차이므로, 일부 지자체는 사전심의 절차를 운영하거나, 공투센터 사전검토를 의무화하여 보완된 사업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담당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투자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충실하지 못한 심사의뢰서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다수 공투센터에서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지자체가 공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전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심사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고 사업계획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은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과율만으로 투자심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5. 센터 운영 성과

투자심사 사업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투자심사 검토의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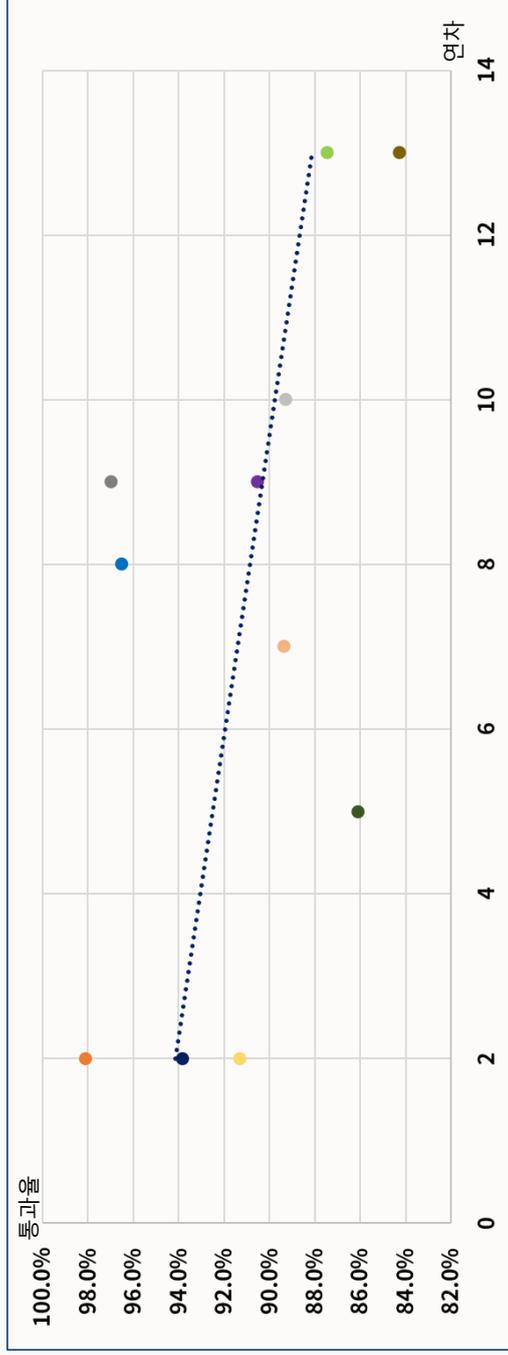
투자심사에 의뢰되는 사업은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여, 심의위원들이 모든 사업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



투자심사 검토의 객관성 강화

지방 공투센터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비해 더욱 보수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무심사 과정 등에 참여하여 질의 및 확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 지적 등을 수행하고 있음

공투센터 운영연차 대비 지자체 투자심사 통과율(위원회 상정 대비)



5. 센터 운영 성과

투자심사를 통한 재정 절감 효과

구분	금액(억 원)			기준
	2022	2023	2024	
A	5,392	7,468	13,459	8,773
B	1,294	282	713	763
C	506	1,019	170	565
D	1,878	2,726	1,956	2,187
E	58	1,969	570	866
F	3,399	1,997	2,429	2,608
G	649	1,664	385	899
H	4,324	5,299	3,693	4,439
I	1,117	2,850	823	1,596
J	508	479	462	483
K	387	1,924	1,917	1,409
L	1,122	2,768	2,011	1,967
합계	22,656	32,468	30,612	26,555

투자심사 제도를 통한 재정 절감 효과

투자심사 의뢰 또는 위원회 상정 당시 총사업비 합계와,
 투자심사 결과 승인(적정, 조건부)된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의 차이를
 투자심사 제도를 통한 재정 절감 효과로 정의

지방공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 확대 예상

앞서 센터 운영 연차와 투자심사 통과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감안하면, 공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될수록
 재정 절감 효과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음

03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1. 센터 위상 정립 방안
2. 투자심사 효율성 증대 방안
3.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1. 센터 위상 정립 방안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한계

지방공투센터는 투자심사사업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거나 계획을 수정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함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와 달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의견을 지자체 투자심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의 전문기관과 달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내부조직으로서 시·도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

최근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타당성조사 기준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상향할 경우, 1,0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방안 검토 필요

1. 센터 위상 정립 방안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역할 확대



투자심사 절차 내 지방공투센터 역할 정립

지방공투센터 참여의 제도적 근거 강화 및 투자심사와의 연계 방안 마련



행안부 매뉴얼 내 지방공투센터 활용 근거 명시

매뉴얼 내 공투센터 설립 근거 및 역할, 전문기관 지정 등, 센터의 설립 및 역할을 제도적·규범적으로 보장



투자심사위원회 참여 확대

- 센터 연구원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센터 검토 의견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유 논의되고, 회의록 및 심사 자료에 검토 결과 반영 필요
- 센터 의견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위원회 내 설명 기회 제공 등)
- 위원회 결과와 센터 검토 의견 간 차이 발생시, 사유 및 배경을 공유하는 환류 절차 필요





1. 센터 위상 정립 방안

전문성 강화 방안



센터 역량 제고를 위한 학습 및 교류 확대

지속적 학습과 교류를 통해 역량 내실화
전국 단위 공동연구를 발굴하여 검토 방법론 및 기준 등에 대한 심층적 비교 분석 수행



분석 방법론의 고도화

경제성 분석을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석 지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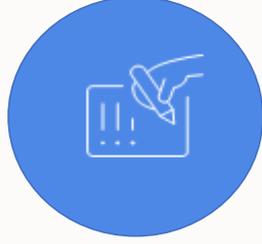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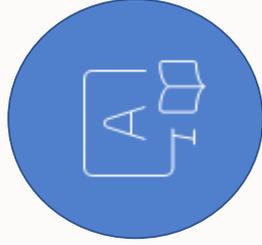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외부 전문가 검수위원회 운영 방안 등 검토
전문가 풀의 공동 활용 및 공유체계 마련

2. 투자심사 효율성 증대 방안

사전검토 및 컨설팅 체계 구축

사전검토 및 컨설팅 항목 표준화
투자심사 의뢰 시 사전검토 및 컨설팅 결과 제출
조건부 승인사업 조건이행 여부 사후관리



표준 평가기준 개발 및 적용

필수 검토 항목 및 기준 표준화
단계적 정량적 평가 지표 도입

현실적 경제성 분석 및 적용 체계 마련

사업유형별 경제성 분석 선택적 적용과 간소화
편익산정 기준 등 주기적 갱신



타당성 검증 기간 연장

타당성 검토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1개월 내외에서
2개월 수준으로 검증기간 연장

3.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법적 근거 강화 및 역할 확대 방안

법적 지위 명확화

- ◆ 시행령이나 매뉴얼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변경에 따른 지방공투센터 역할 확대

-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시,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형 규모사업 검증 필요
- ◆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1,000억 미만 사업들에 대한 지방공투센터 역할 강화 방안 검토
- ◆ 사업종류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검토 수준 차별화 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

현행 매뉴얼의 한계 분석

- ◆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단계별 업무 수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 검토 항목별 세부 분석 방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 일반화된 기준 제시로 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분석 기준 마련 필요
- ◆ 실무자가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실용성이 낮음

지방공투차원의 세부 매뉴얼 마련

- ◆ 투자심사 단계별로 센터의 역할과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
- ◆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 매뉴얼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 체계 마련

- ◆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
- ◆ 개선 체계 구축을 위해 매뉴얼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센터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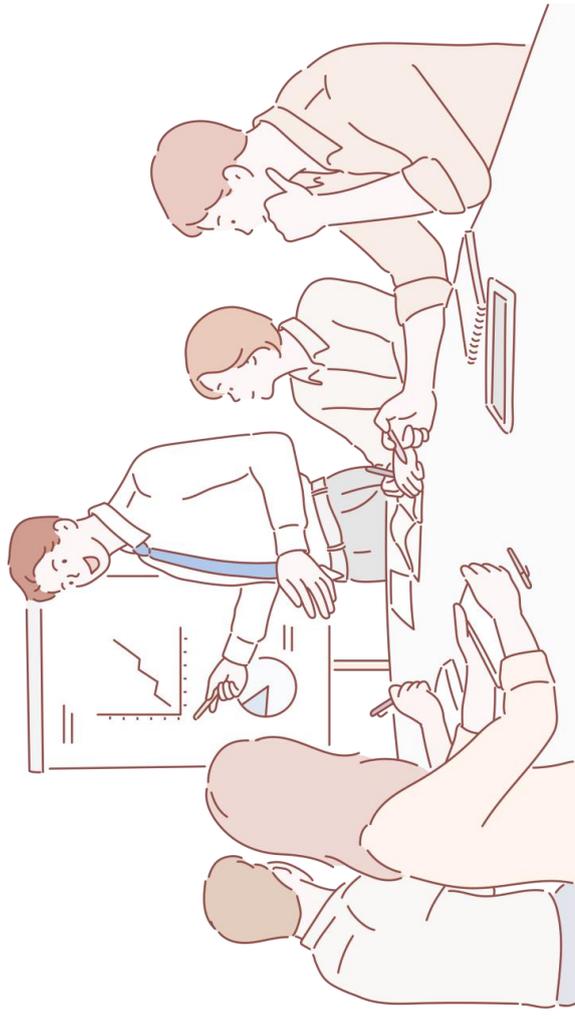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5.10. 23.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동근



Contents

1. 연구개요

2. 추진경과

3. 주요 결과

1) 지방재정투자심사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4)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4. 기대효과

01 연구개요

1. 연구개요

1) 연구개요

- 과제명 :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수행기간 : 2025.04.14.~2025.11.13. (7개월)
- 연구진 : (서울) 김동근(책임), 주재홍, 어하나, 오윤정 (경기) 김병석, 이호영 (인천) 박찬운, 서대현, 심수빈 (대구) 서상언, 김광석 (충북) 박윤선
- 연구예산 : 18,000만 원(서울 500만 원, 인천 500만 원, 경기 300만 원, 충북 300만 원, 대구 200만 원)
- 연구내용 :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문제의식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연구 배경

-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사업 일정 지연 및 행정력 낭비 등 여러가지 비효율 발생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주요 내용

-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협력 추진
- 제도 개선 인건 구체화 및 지방공공투자센터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안 도출

기대효과

- 중앙정부에 개선방안 제안 및 제도 개선
- 절차 효율화 및 재정 자율성 강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1. 연구개요

2) 연구배경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협력 추진”

- ◆ 지방자치 30년,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전문성 침해**
 - 민선 지방자치시대 도입 이후 30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
 - 그러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과도한 제도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전문성 침해
- ◆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사업 일정 지연 및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비효율 발생**
 -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절차 중복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24년 7월),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도 개선은 미미
- ◆ 지자체 자체심사 대상 확대에 따라 투자심사 전문성·일관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투자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법적 근거·전문인력·예산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
 - 지방공공투자센터 간 역할과 역량이 상이하여,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역할 재정립 및 제도적 보완 필요

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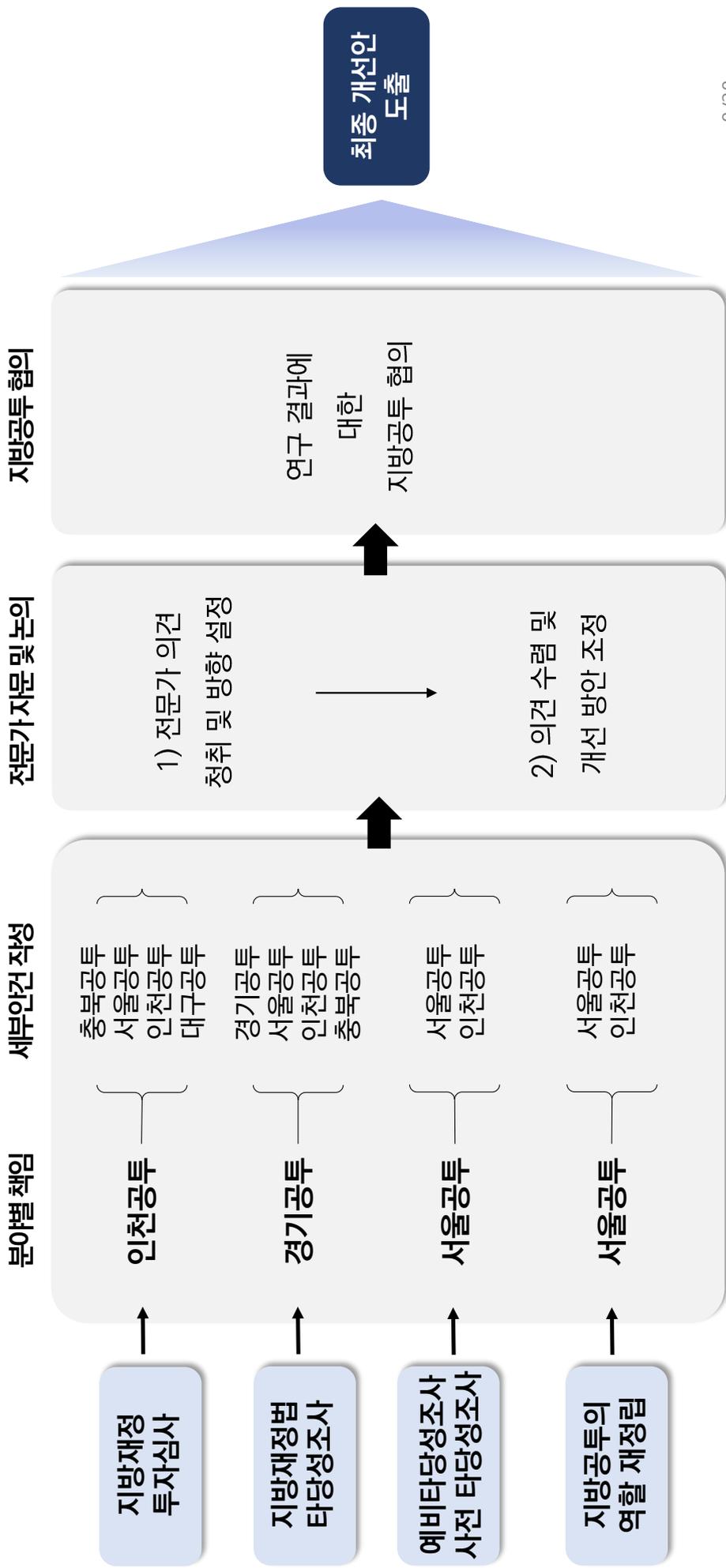
3) 연구내용 및 방법

- ◆ 지방공공투자사업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상의 절차와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
 -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 체계가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 및 지방재정 자치권 확대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검토
 -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 ◆ 검토 대상 제도에 관한 법령·문헌·사례 등을 분석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도출**
 - 관련 법령, 정부 및 지자체 문헌, 기존 연구보고서,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검토
 - 제도별 정책 현황 및 사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연구진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협의 및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

02 추진경과

연구 로드맵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추진경과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일정

구분	2025 4월	2025 5월	2025 6월	2025 7월	2025 8월	2025 9월	2025 10월	2025 11월
안전구체화 및 검토	완료							
개선방안 도출		완료						
적용방안 협의 등			완료					
우선순위 도출								
결론								
지방공투 협의			●	●	●	●	●	●
전문가 자문 회의			●	●	●	●	●	●
관련 공무원 논의 및 제안					●	●	●	●
보고서 작성					●	●	●	●

2. 추진경과

(2) 주요 회의 내용

❖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25년 1차 정기회

- 일 시: 2025년 1월 6일(월) 16:00~17:00 / 화상회의
-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현황 및 2025년 추진할 공동위크샵, 정책포럼, 공동연구 등에 대해 논의
- 2025년 공동연구는 참여하는 지방연구원의 연구비 예산으로 수행

❖ KICK-OFF 회의

-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10:00~11:00 / 화상회의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단계에서 지방공투가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
- 연구진별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유 및 제도 개선 안건 구체화 방안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 공동연구진 1차 회의

- 일 시: 2025년 3월 24일(월) 09:30~11:00 / 화상회의
-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분류별로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
- 단독 제안한 항목은 제안한 센터에서 진행하며, 공동 제안된 항목은 역할분담을 통해 지정된 센터에서 연구를 진행

2. 추진경과

(2) 주요 회의 내용

❖ 공동연구진 2차 회의

- 일 시: 2025년 8월 7일(목) 10:00~12:00 / 화상회의
- 제도별 개선방안의 정합성, 중복성,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의견 공유
- 향후 연구 일정 등 논의

❖ 외부 전문가 1차/2차 자문회의

-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4:00~17:00 / 9월 16일(화) 10:00~12:00 / 대면회의
- 보고서 논조 전환, 공투센터 역할과 전략 제시, 독립성 및 제도 설계, 제도의 현실성 등의 전반적인 보고서 방향성에 대한 자문
- 제도 개선 방안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견 공유

❖ 공동연구진 3차 회의

- 일 시: 2025년 9월 16일(월) 13:00~16:00 / 대면회의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반적인 보고서 구조 및 방향에 대해 논의
- 개선방안의 세부사항 검토 및 우선순위 도출 등 논의

2. 추진경과

(3) 추후 일정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정책포럼 발표

-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13:00~17:00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 센터 간 업무교류와 상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지식 교류
- 공동연구과제 성과발표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 수렴

- 일 시: 2025년 10월 말 예정
-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유
-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 추가 및 보완 예정

❖ 지방정부 협의 및 중앙정부 제안

- 일 시: 2025년 11월 예정
-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중앙정부에 개선방안 제안 및 제도 개선

03 주요 결과

1) 지방재정투자심사

주요 개선방안 표

▶ 제도별 개선방안(총 14건): 지방재정투자심사 4건, 지방재정법타당성조사 5건, 예비타당성조사 2건,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3건

분류	내용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4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2.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 3.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4.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5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2.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3.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4. 유사 중복 제도 개선 5.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2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2.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3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공투자센터 업무 제도화 2.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3.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교류

3. 주요 결과_1) 지방재정투자심사

(1)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3. 주요 결과_1) 지방재정투자심사

(2)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구분 간소화

현황

- 투자심사는 자체심사(의뢰주체=심사주체)와 의뢰심사(의뢰주체≠심사주체)로 구분

문제점

- 의뢰심사는 심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는 구조,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
- 총사업비가 200~300억 원인 경우 사업 추진 주체에 따라 심사 주체가 달라져 행정 혼선 야기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뢰심사 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투자사업 & 광역자치단체의 전액 자체재원 사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로 전환
 - 기초 자치단체의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 규모 300억 원으로 조정
 - 200~300억 원 규모의 일반투자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사
 -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 자체재원사업들은 청사·문화·체육시설 구분 없이 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하여 자체심사로 전환

3. 주요 결과_1) 지방재정투자심사

(3)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현황

- 2015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기준 변경
- 이전에는 제외되던 공유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되며, 이는 부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조치
 - 단, 동일 목적의 시설 증·개축이나 지하시설 조성 후 복개 등 원래 용도 유지시에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문제점 1) 법률적 근거 미비

- 공유재산가격 포함으로 총사업비가 인위적으로 상승 → 상위기관 의뢰심사·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 공유재산가격 반영 사유 & 예외 규정의 경제적 근거 미흡, 기회비용 개념 적용도 불명확
- 총사업비 기준이 행안부 내부 매뉴얼에만 근거해 법적 근거 부족,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 존재

문제점

(문제점 2)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과 불일치

[표] 법령별 총사업비 내 사업주체별 부지비 반영 여부

구분	사업주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지방재정투자사업	국가	○	○	○
	지방자치단체	○	○	○
국가재정법 사업	국가	X	○	○
	지방자치단체	○	X	○
민간투자법 사업	국가	X	-	○
	지방자치단체	-	X	○

3. 주요 결과_1) 지방재정투자심사

(3)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3. 주요 결과_1) 지방재정투자심사

(4)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03 주요 결과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3. 주요 결과_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1)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현황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
 - 현재 타당성조사(500억 원 이상)는 중앙기관(LIMAC, LOMAC)에서만 수행
-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는 시·도에서 자체심사 & 타당성조사는 중앙기관(LIMAC, LOMAC)에서 수행

문제점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약화

- 전액 자체재원 사업까지 중앙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
 - 타당성조사 결과를 투자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치권과 재량권이 제한
- 「국기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3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수행
 - 형평성 문제 발생

(문제점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주체 간 불일치

[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단계별 수행기관

광역자치단체	구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일반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		
기초자치단체	일반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	행정안전부 지정 기관 (LIMAC, LOMAC)	자체심사
	일반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		자체심사 (중앙)
				자체심사
				의뢰심사(시·도)

3. 주요 결과_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1)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문제점 3) 지역사업의 특성 반영 및 적기 추진에 한계

- 재정투자사업은 절차의 복잡성과 제한된 타당성조사 일정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움
- 지방공투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춰 신속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앙정부 전문기관은 지역 여건 파악의 한계로 비효율이 발생

문제점

(문제점 4) 민간에서 추진하는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부족

-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이 민간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
→ 실제 투자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함
- 지자체 입장에서 시간&비용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지만, 실제 투자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단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지정,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지방공공투자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중·장기) 총사업비 300~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공공투자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선방안

3. 주요 결과_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의 판단기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지역과 공사비 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지자체 사업에 획일적인 기준 적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기준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막는 부작용 초래- 공사비 규모 등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조사 실익이 낮은 사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행정적 비효율 발생<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 타당성조사 분석 결과, 보상비 비중 80% 초과 사업 다수 존재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별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차등화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지자체(시·도) 500억 원 이상 / 기초지자체(시·군·구) 300억 원 이상- 총사업비와 공사비를 함께 고려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도입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공사비(예: 300억 원 이상) 기준' 추가

3. 주요 결과_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3)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3. 주요 결과_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4) 유사 중복 제도 개선



3. 주요 결과_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5)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현황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분석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자료
-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전문 공개, 일부 민감 정보는 부분 제한 공개

문제점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공공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임에도 보고서가 비공개되어 결과 확인이 어려움
- 보고서 미공개는 정보공개에 원칙과 민주주의 실현 취지에 반하며, 주민이 사업 판단 근거에 접근하지 못함
- OECD 역시 공공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조사결과와 공개를 강조
 - 투명성 제고는 부패 예방, 행정 효율성 향상, 예산 대비 높은 가치 창출에 기여



개선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처럼 **원칙적 공개**가 필요하며, 투자심사 완료 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공개를 전제로 하면 공무원과 전문가의 분석이 더 신중·객관해지고, 유사 사업 기획 및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

03 주요 결과

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3. 주요 결과_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분석 단위 개선

현황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낙후도 분석 시, 서울·부산·인천 등 특별·광역시는 특별·광역시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분석
 - 시·군: 기초자치단체(시·군) 단위까지 분석
 - 특별·광역시: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단위만 분석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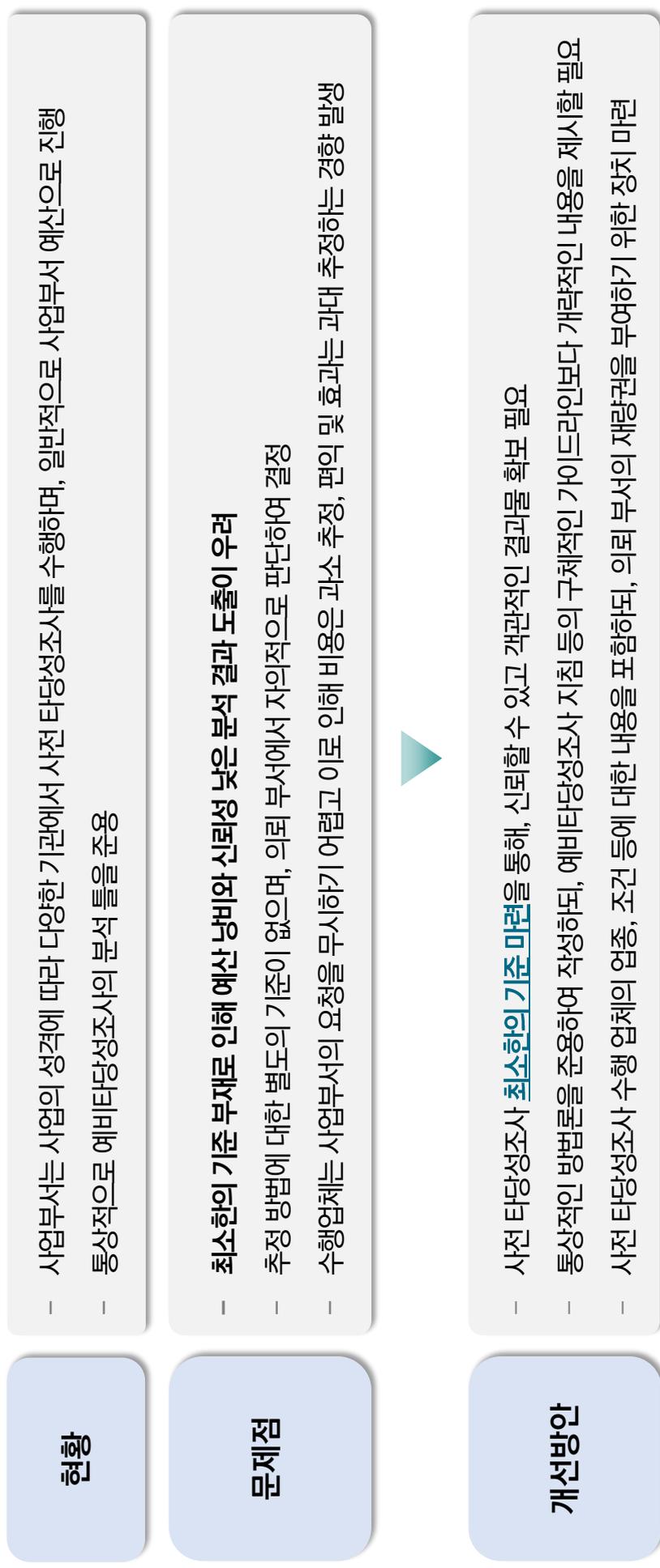
- 특별·광역시 내 지역 불균형이 크고 전국 대비 낙후된 시·군·구가 있으나 이를 미고려
- 강남·강북(서울), 원도심·구도심(인천), 동서(부산, 대전) 등 대부분의 특별·광역시는 자치구 간 격차 문제가 심각
- 사업의 주요 영향권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광역시 단위로 지역 낙후도를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

개선방안

- **특별·광역시** 사업의 지역낙후도 분석 시 **분석단위를 광역 단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로 수행할 필요**
- 일부 사업은 특정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광역 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
- 행정구는 시청 위임사무만 수행하지만, 자치구는 구청장/구의회를 선출하고 고유사무를 수행
-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간 불균형과 자치권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낙후도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

3. 주요 결과_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2)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03 주요 결과

4)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3. 주요 결과_4)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1) 지방공공투자센터 업무 제도화

현황

- '25.1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자체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전문성·법적·예산·인력지원이 미흡

문제점

- 시·도 자체심사 대상사업 확대로 자체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자체심사 확대로 지자체의 사업부서와 투자심사 담당부서, 전문기관 등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대책 미흡
- 투자심사 수행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로 객관적 평가 한계
 - 지방공투의 운영 조례 제정이 의무가 아니므로 일부 지자체는 법적 근거와 독립성이 미흡하고, 검직 구조 등으로 인해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

3. 주요 결과_4)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1) 지방공공투자센터 업무 제도화

문제점

- 지역별 상이한 심사체계 및 전문성으로 일관성 및 신뢰성 결여
 - 지방공공투자센터 간 역할, 사전검토 기간, 평가지표, 인력·예산 수준이 제각각으로 투자심사 과정의 일관성·객관성·전문성이 부족

개선방안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범·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부분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추가
 - 심사 안건 교부 부분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견서 작성 요청’ 명문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명문화
- 지방공공투자센터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에 ‘지방공공투자 관리센터 전문가’ 참여 명문화
-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부여**
 - 지방공공투자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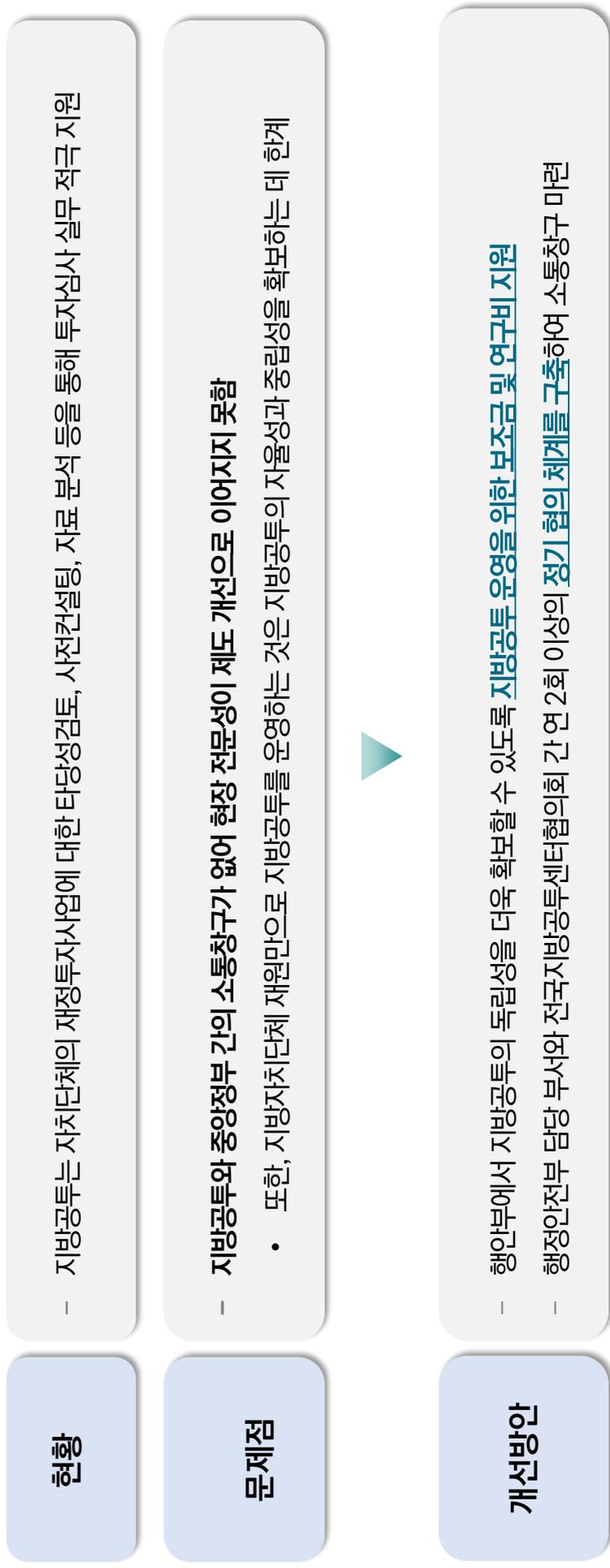
3. 주요 결과_4)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2)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3. 주요 결과_4) 지방공공투자센터 역할 재정립

(3) 지방공공투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교류



3. 주요 결과_5) 우선순위 도출(안)

(1) 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도출(공투 역할 재정립 제외)

순위	관련 제도	내용
1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2-1]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2순위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1-3]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3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2-5]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4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2-2]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5순위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1-1]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2) 향후 연구 활용방안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개선방안 제안 의견 제출 및 제도 개선

04 기대효과

4. 기대효과

◆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 효율화 및 재정 자율성 강화

- 제도 간 중복 해소, 투자심사 실효성 제고,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사업 특성 반영

[제도 간 중복 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지방재정법」과 타 법령 간 타당성검토 절차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여 유사한 검토의 반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 타당성검토 절차의 통합·정비를 통해 사업 추진 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사업 특성 반영을 통한 심사기준 고도화]

- 행사·축제사업 등 특수한 사업 유형에 대해 맞춤형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 및 전문성 향상
- 유형별 기준 정비를 통해 사업별 정합성 있는 타당성 검토 유도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 지방공투 실무 경험의 제도에 반영으로 현장 중심 행정체계 확립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중앙정부-지방공투 정례 협의체계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접수: dgkim@si.re.kr, 02-2149-1394
